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사고

이 풍호

(교통안전공단 교수)

1. 미리말

매년 경찰청이 발표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사고는 총 발생건수의 0.3%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도로현장에서 운행모습을 관찰해보면 무리한 앞지르기 행태가 자주 목격된다.

아찔한 묘기 대행진을 보는 것처럼 손에 땀이 날 정도의 위험한 앞지르기를 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무리한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연쇄충돌 현상으로 발전하고 나가 대형사고로 연결되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앞지르기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앞지르기 관련조항을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처벌하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제4호(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에 적용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앞지르기 방법), 제19조의 2(앞지르기 방해금지), 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 20조의 2(앞지르기 금지장소), 20조의 3(끼어들기의 금지), 제56조제2항(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일으켰을 때이다.

2. 관련 조항

가. 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

- (1)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9조의2(앞지르기 방해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다. 도로교통법 제20조(앞지르기 금지 시기)

-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2) 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0조의 2(앞지르기 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교차로·터널안 또는 다리위
-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마. 도로교통법 제20조의 3(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내부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3.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사고의 성립요인

| 항 목 | 내 용 | 예 의 사 항 |
|------------------|--|---|
| 1. 장 소 적 요 건 | • 앞지르기 금지장소 : 교차로, 커브길, 고갯마루, 내리막, 터널안,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장소 | • 앞지르기 금지장소 외 지역 |
| 2. 피해자 적 요 건 | •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 • 불가항력·만부득이한 경우 앞지르기 하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
| 3. 운전자 적 요 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지르기 금지위반 행위(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병진시 앞지르기 ② 앞차의 좌회전시 앞지르기 ③ 위험방지를 위한 정지, 서행시 앞지르기 ④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7개소) ⑤ 실선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 앞지르기 방법위반 행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측 앞지르기 ② 2개 차선 사이로 앞지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만부득이한 경우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 |
| 4. 시 설 물 설 치 요 건 | • 도로교통법 제3조(안전표지, 설치관리), 제104조(권한위임)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안전표지 : 규제표지 제213호(앞지르기 금지표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구역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는 제외 |

4. 앞지르기시 주의사항

가. 앞지르기 방법과 순서

제차가 다른 제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 (1)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가 확인 : 앞지르기 할 때에는 우선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전방·후방의 좌측 및 우측 부분의 안전확인 :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사경 등으로 후방과 좌측이나 우측 부분을 확인한다.
- (3) 좌측 방향지시 시기 및 진로 변경 : 좌측 방향지시기를 조작, 약 3초후 최고 속도의 한도 내에 가속, 진로에 여유가 있을 때 좌로 들어가 앞차의 좌측과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며 통과한다.
- (4) 우측 방향지시, 진로변경 및 신호의 종료 : 우측의 방향지시기를 조작, 앞지르기 한 차의 끝미리에 앞지르기 당한 차가 나타날 때 까지 진행하였다가 진로에 여유가 있을 때 우로 되돌아와 신호를 멈춘다.

나. 앞지르기 금지장소와 시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 7개소, 상황적 금지 3가지 경우,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금지 등 11가지 경우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제자는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제자의 앞에 끼어들거나 앞지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예로 앞의 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신호대 기나 보행자를 위하여 정지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에 끼어들거나(새치기)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5. 앞지르기 관련 판례

가. 커브 길에서 대향 차가 앞지르기 하여 중앙선 침범 진행해 올 때 반대방향 차는 이를 대처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다.

나. 편도 1차선 진행 중 T자형 소로 연결지점에

$$\frac{(\text{자기 차의 속도}) \times (\text{자기 차의 길이} + \text{앞차의 길이} + \text{차간거리} \times 2)}{(\text{자기 차의 속도}) - (\text{앞차의 속도})} = \frac{(50\text{km}/\text{h}) \times (5\text{m} + 5\text{m} + 20\text{m} \times 2)}{(50\text{km}/\text{h} - 40\text{km}/\text{h})} = \frac{50 \times 50}{10} = 250$$

| 앞차의 속도 (km/h) | 자기 차 속도 (km/h) | 속 도 차 (km/h) | 차간거리 (m) | 앞지르기에 필요한 거리(m) | 비 고 |
|------------------|-------------------|-----------------|-------------|--------------------|---------------|
| 30 | 40 | 10 | 15 | 160 | 보통 상당히 곤란 |
| 40 | 50 | | 20 | 250 | |
| 50 | 60 | | 25 | 360 | |
| 40 | 60 | 20 | 20 | 150 | 이상적 |
| 35 55 | 40 | 5 | 15 | 320 | 상당히 곤란 불가능 |
| | 60 | | 25 | 720 | |

서 우측에 자전거가 있어 추월하고자 할 때는 간격을 넓히고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

- 다. 무리하게 추월하려는 뒤차에 대해 앞차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코자 추월선 진입 주행중 장애물이 있어 사고가 야기된 경우 앞지르기 방법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마. 2개 차선사이로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 야기한 경우 선행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바. 2개 차선 진행차량 오른쪽 틈사이로 앞지르

기 하다가 사고 야기된 경우 앞지르기 한 차량에 사고책임이 있다.

- 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은 앞지르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의 간격만을 넓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광협(廣狹), 곡직(曲直), 보·차도구별의 여부, 노면 상태 등의 상황에 적합하고 또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사고 방지의 관점에서 경음기를 울리는 등 운전상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앞지르기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❶

협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소방본부 관할 지역내의 소방관 29명을 초청하여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의 교육용 시험설비를 이용한 특별수습과정을 마련하여 방재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은 협회가 지난 5월 전북지역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과정에 이어 두번째로 시도한 것으로 물소화설비 및 가스계 소화설비, 경보설비의 구조원리와 실습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진행하고 선진국 방재기관 및 활동 소개, 특별강좌, 시청각 교육, 위험물 해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협회는 두번의 특별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관련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동 과정을 보완 계속 시행키로 계획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의 소방본부와도 협의하여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특별과정 수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처 : 교육부 (02)780-8111 (구내) 274, 275)